

국제식품규격위원회

# CODEX NEWSLETTER



식품의약품안전처

NO.2

2020.4.27[월]

## MAIN ISSUE

식약처가 전하는  
CODEX NEWSLETTER 주요내용

함께하는  
식품안전  
건강한  
대한민국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입니다.

### ISSUE 01

2020년, 제19회 “식품안전의 날”

### ISSUE 02

주요 외국 COVID-19 관련 식품  
안전 대응 현황



### ISSUE 03

주요 외국 식품기준 개정 및  
변경 사항



### ISSUE 04

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의견 개진 요청 공지



# CODEX ALIMENTARIUS CODEX

##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188개국과 236개의 국제기구가 가입되어 있는 정부간 기구로  
식품안전 및 교역관련 국제기준을 설정하고 마련합니다.

특히 마련된 국제기준은 국가간 식품교역에서 **유일한 기준**으로 무역 분쟁이 있을 경우  
또는 각 국가의 식품기준 설정시 참고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FTA의 확대로 그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매년 평균 10회 이상 CODEX 회의에 참여하여 국제식품기준과  
우리나라의 기준이 조화를 이루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우리의 식품을 세계로 알리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 ISSUE 01

# 식품 안전의날



### 2020년, 제19회 “식품안전의 날”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여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 촉구를 통한 식품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추구하여 왔습니다. 이후 「식품안전기본법」 개정(‘16.12.02)에 따라 매년 5월 14일은 ‘식품안전의 날’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2010년 제9회 행사 중 논의를 거쳐 2011년 제10회부터는 ‘식품안전의 날’을 전후로 약 2주간을 ‘식품안전 주간’으로 확대 지정하였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에 있었던 제73차 UN 총회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6월 7일을 ‘세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5월은 야외활동이 많고 기온 상승에 따라 식중독을 일으키는 미생물의 활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식품안전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따라서, 식품의 제조, 유통, 소비 전반에서 식품안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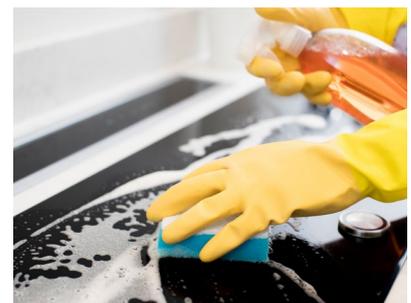
FAO와 WHO는 지난 4월 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식품산업현장과 식품 소매업장에 종사하는 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식품생산·제공을 위한 지침(COVID-19와 식품안전: 식품업 종사자를 위한 지침)을 소개하는 영상 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해당 세미나를 주도한 Peter Ben Embarek 박사 (WHO식품안전전문가)는 '지금까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가 식품 또는 식품포장지로 인해 사람에게 전파된 사례는 없었고 그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식품업계 관련 종사자가 현재 COVID-19에 따른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이를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FAO와 WHO가 합동으로 마련한 본 식품안전 관련 지침은 Codex 문서 중 '식품 위생에 대한 전반적인 원칙(CXC 1-1969)' 지침문서를 기반으로 하며, 식품업계 종사자들의 COVID-19 인식 증대, 식품업계 종사자간의 충분한 거리 유지, COVID-19로 증상이 의심되는 직원 격리 필수 등의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한편 우리 식약처는 2월부터 'COVID-19 관련 식품안전관리 강화 협조 요청', 'COVID-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등의 내용을 식품 관련 업계 및 협회에 전달하면서 국내 식품관련 업계가 COVID-19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해 왔습니다. 해당 내용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앙 방역대책본부에서 운영하는 COVID-19 홈페이지(nvoc.mohw.go.kr)내 "공지사항>집단및 다중이용시설"에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COVID-19에 대한 여러국가의 공동대응 지침

\*출처

- ① 미국: [www.fda.gov/food/food-safety-during-emergencies](http://www.fda.gov/food/food-safety-during-emergencies)  
[www.fda.gov/food/fppd-safety-during-emergencies/food-safety-and-coronavirus-disease-2019-covid-19#March27QAs](http://www.fda.gov/food/fppd-safety-during-emergencies/food-safety-and-coronavirus-disease-2019-covid-19#March27QAs)
- ② 유럽: [www.efsa.europa.eu/en/news/coronavirus-no-evidence-food-source-or-transmission-route](http://www.efsa.europa.eu/en/news/coronavirus-no-evidence-food-source-or-transmission-route)
- ③ 일본: [www.mhlw.go.jp/content/11130500/000603093.pdf](http://www.mhlw.go.jp/content/11130500/000603093.pdf)
- ④ 호주·뉴질랜드: [www.foodstandards.gov.au/consumer/safety/Pages/NOVEL-CORONAVIRUS-AND-FOOD-SAFETY.aspx](http://www.foodstandards.gov.au/consumer/safety/Pages/NOVEL-CORONAVIRUS-AND-FOOD-SAFETY.aspx)

미국(FDA), 유럽(EFSA), 호주·뉴질랜드(FSANZ) 및 일본(후생노동성) 관계당국은 공통적으로 식품의 섭취나 식품 포장재 등의 접촉에 따른 COVID-19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으며, 그런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단순 알콜 손소독제로 대체하는 것이 아닌 손 씻기, 기침 에티켓 등의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와 식품 용기·기구의 소독 등을 권고하였습니다.



## FAO/WHO와 대한민국의 지침

	<b>[ FAO/WHO ]</b> COVID-19와 식품안전:식품업 종사자를 위한 지침	<b>[ 대한민국 ]</b> COVID-19 예방을 위한 사업장 집중관리 지침
책임자 지정	식품안전과 관련된 위험요소를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 지정 (식품안전 관련 당국과 연락하여 조언을 구해야 함)	감염관리 책임자(팀장급 이상) 지정하여 COVID-19 예방 및 관리 책임 부여(직원 증상 모니터링 및 신고접수, 사업장 내 위생물품 비치 파악 등)
직원 교육·홍보	개인위생조치 강화 및 관련 교육 실시(식품위생원칙, 지침 사용 및 준수)	손씻기, 기침 예절 등 COVID-19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활용하여 자체 홍보
직원, 방문객 관리	몸이 불편한 직원은 출근 지양 · 감염 직원과 밀접하게 접촉한 직원 14일간 자가격리 · 감염 직원으로 인한 작업장 폐쇄 권장하지 않음 · 감염에서 회복한 직원을 위한 업무 복귀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사업장 출입 및 근무시 체온 확인, 1일 2회 발열 확인 · 발열 시 외출 자제, 자택에서 3~4일 경과 관찰 · 여행력있는 직원 2주간 출근 금지 · 고용주가 업무배제 대상 직원에 불이익 주지 않도록 주의
사업장 내 사회적 거리두기	· 작업장 내 직장동료 간 1m 거리 유지 · 식품작업자가 서로 마주 보지 않도록 배치 · 작업 그룹 및 팀 구성으로 그룹 간 상호작용 감소 · 구내 식당 내 좌석배치 1m 거리 유지 · 불필요한 물리적 접촉 최대한 제한	· 사업장 직원의 좌석 간격(1m 이상) 확대 · 출퇴근시간, 점심시간 교차 실시 및 일정거리 두고 식사 · 실내 휴게실, 다용도공간 등 다중 이용공간 일시 폐쇄 · 집단행사, 소규모 모임, 출장 등 연기 또는 취소

## 미국 FDA

### COVID-19 세계적 대유행(Pandemic)으로 인한 수입식품안전 검증제도(FSVP) 임시 정책 발표

미국 FDA는 기존에 수입식품안전검증제도(FSVP; Foreign Supplier Verification Program)에 따라 현지 실사와 표본 검사, 식품안전기록 검토 등을 실시해왔습니다만, COVID-19 세계적 대유행에 따라 지난 4월 2일 수입업체(자)가 시행해야 하는 현지 실사를 일시적으로 유예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전세계 각국 정부가 COVID-19 확산 억제를 위해 여행 제한 및 권고조치를 내리고 있어 수입업체(자)가 FSVP 실사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마련된 대응 방침으로 여행 제한 및 권고 적용 국가나 지역에 위치하는 식품 공급업체는 한시적으로 식품안전 위험을 최소화할 '자체 검증' 방법으로 현지 실사를 대체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출처

① [www.fda.gov/fppd/cfsan-constituent-updates/fda-issues-temporary-covid-19-policy-receiving-facilities-and-fsvp-importers-meeting-fsma-supplier/](http://www.fda.gov/fppd/cfsan-constituent-updates/fda-issues-temporary-covid-19-policy-receiving-facilities-and-fsvp-importers-meeting-fsma-supplier/)

② [www.kati.net](http://www.kati.net) → 수출뉴스 → 시장동향



### 미국 FDA

#### 2020년 2월 3일 FDA에서 소규모업체 법률준수가이드(Small Entity Compliance Guide) 발표에 따른 영양성분표 표시에 대한 라벨 규정을 수정

##### ▶ 적용대상

제품에 영양성분표 Labeling을 해야 하는 식품 및 건강보조(기능)식품 제조 회사 모두

##### ▶ 적용대상식품 및 예외조항 여부

- FDA는 식품의 소비대상을 연령 기준으로 3개 그룹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① 유아~12개월, ②1세~3세, ③4세 이상의 성인. [Daily Reference Values Used to Calculate Percent DV 참고] 각 연령별로 적용되는 1일섭취량 기준, 1회 권고 섭취량 등이 상이하므로, 제조사들은 제품별 해당하는 카테고리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임산부와 모유수유를 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별개의 섭취량 기준이 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건강보조식품도 식품의 일종으로, 영양성분표기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예외: 연간 총 매출액이 \$500,000 이하이거나 연간 총 식품매출액이 \$50,000인 업체가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식품의 경우, 의료용 식품의 경우, 또는 모든 영양소와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미미한 식품의 경우는 영양 성분표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제품이나 제품의 광고에 영양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없어야 합니다.

##### ▶ 업데이트된 조항

- 신설: 첨가당 (Added Sugar), 비타민D, 칼륨에 대한 표기 사항

- 변경: 식이섬유, 총당류(Total Sugars), 당알코올(Sugar Alcohol) 에 대한 일부 정의 및 표기 방법

- 선택: 의무적인 표기사항에서 제외되었으나 비타민A, 비타민C 등은 자율적으로 표기 가능함

- 삭제: Calories from Fat 과 Other Carbohydrate 은 표기사항에서 삭제됨

▶ 기록보관의 의무 영양성분 표기 내용에 대한 검증 서류를 포함하여 관련 서류를 2년간 보관해야 함



#### ▶ 법규 준수 기한

- 연간 매출 1,000만 달러 이상인 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미만인 업체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 꿀, 메이플시럽과 같은 단당류 제품 또는 특정 크랜베리 제품 등의 제조사들에 대해서는 2021년 7월 1일까지 법규준수를 보조하기 위한 법률시행 재량권을 행사할 예정입니다.

#### ▶ 법규준수를 해야 하는 이유

- 영양성분표기 규정을 위반한 제품은 오기(misbranded) 제품으로 분류되며, 현행법상 오기된 제품은 상용화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영양성분표기 규정은 강제 법규로서, 이를 위반하면 가처분 및 압류 등의 법률 행위를 초래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FDA는 2020년 1월 1일 이후, 6개월 동안은, 새로운 영양성분표기 준수사항에 대해서 위반 사항이 있더라도 집행을 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제조사와 협력하여 관련 법규 준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 영양성분표기 규정은 강제 법규로서, 이를 위반한 제품은 상용화할 수 없으며, 가처분 및 압류 등의 법률행위 적용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 자세한 라벨표기법 및 칼로리 계산법 등이 포함된 SECG전문

[ [www.fda.gov/media/134505/download](http://www.fda.gov/media/134505/download) ] 참조

\*출처

[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releases-small-entry-compliance-guide-nutrition-and-supplement-fact-labels](http://www.fda.gov/food/cfsan-constituent-updates/fda-releases-small-entry-compliance-guide-nutrition-and-supplement-fact-labels)

## 2020년 3월 25일 미국, 여러 주에서 식품 포장에서 PFAS 금지 법규화 진행 중

\*관련정보: 미 상원, 식품 포장재 포함 PFAS 사용 금지  
법안 발의(2020-01-31)

**\* PFAS:** Per-, 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화합물, 음식이 포장재에 달라붙지 않도록 하는 코팅재로 주로 사용하며, 조리기구, 반도체 등의 각종 제품에 흔히 포함되어 있는 물질. 최근 환경단체의 연구조사에서 PFAS가 환경에 축적되면서, 산화스트레스, 면역억제, 수용체-매개작용 등을 유발하여 후천적 유전적 변화 또는 세포증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발표가 있었음. 발암물질에는 등록되지 않았으나, 그와 유사한 위험성을 경고함.

**\* PFOA(Perfluorooctanoic Acid: 과불화옥탄산), PFOS(Polyfluoroalkyl Substances, 과불화옥탄술폰산):** 가장 많이 연구된 PFAS 화합물로, 산업계에서는 그 사용을 자발적으로 폐지하는 단계를 밟고 있으나 여전히 환경에 잔여되어 영향을 미침.

\*출처

- ① The National Law Review, [www.natlawreview.com](http://www.natlawreview.com)
- ②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위해평가보고서

PFAS\* 사용을 제한·금지하려는 조치가 식품 포장제로 확대되었습니다. 즉석 섭취용 전투식량(Military meals ready-to-eat, MREs)의 식품포장에서 PFAS의 사용은 2021년 10월 1일 이후로 금지되었으며(전문 S.1790), 아리조나, 코네티컷, 일리노이, 뉴욕주 등 약 12개의 주에서 식품포장에 PFAS를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 혹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편, EU환경청에서는 지난 12월 사용 규제계획을 이미 발표한 상태이며, EU가입 국가들은 늦어도 2025년까지 PFAS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 2030년까지 전면금지 시행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식약처/평가원은 2015년 발표한 「**과불화옥탄산(PFOA) 및 과불화옥탄술폰산(PFOS)** \*위해평가」를 통해 “우리나라 일반 국민의 과불화합물 노출은 안전한 수준으로 나타났지만, 이 결과는 인체 노출평가를 위해 사용되는 자료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안심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노출원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더욱 정확한 노출평가를 위한 연구개발이 지속되어야 한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또한, 식약처는 기구 및 용기·포장 제조 시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환경부)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과불화화합물(PFOS) 등의 물질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8. 행정예고)

## 유라시아

- 러시아
- 벨라루스
- 카자흐스탄
- 아르메니아
- 키르기스스탄

\*출처

[www.kati.net](http://www.kati.net) → 수출뉴스 → 시장동향

## 유라시아 경제 위원회(EEC), 특정유형의 식품 수출 금지

EEC 이사회는 COVID-19 확산에 따라 주식인 밀 시장을 조사하였으며, 현재 잉여 재고가 남아있음에도 향후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격 상승에 대비하고, 겨우내 충분한 주식 공급을 위해 지방 정부들이 밀을 비롯한 주식이 되는 식품류를 창고에 비축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양파, 마늘, 순무, 호밀, 쌀, 메밀, 수수, 껌질 벗긴 곡물, 굵은 밀가루, 버, 깎 메밀, 메밀로 만든 식품, 대두, 해바라기 씨]등의 수출을 6월 30일까지 일시적으로 금지하였습니다.



# CODEX 온라인작업반 현황 / 의견 개선 요청 공지

## 수출입검사 및 인증제도 분과(CCFICS)

1	<b>제목</b>	<OCS> 국가식품관리제도 인정 및 유지에 관한 Guidance
	<b>주요 내용</b>	국가식품관리제도 전체 또는 일부의 동등성을 평가·인정 및 유지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작업
	<b>의견요청기한</b>	~ 2020.5.1.

## 총회 (CAC)

1	<b>제목</b>	<OCS> 밴댕이 및 밴댕이 관련 통조림 제품 규격(CXS 94-1981) 개정안에 대한 의견 요청
	<b>주요 내용</b>	밴댕이 어종 중 Sardinella lemuru 추가하여 통조림 제품 관리 관련 의견요청
	<b>의견요청기한</b>	~2020.5.31.

##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 분과 (CCNFSDU)

1	<b>제목</b>	< OCS (CL2019/113-NFSDU) > Section B(영양분을 첨가한 유아용 음료/제품) 규격 초안의 5단계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
	<b>주요 내용</b>	성장기용 조제유 규격(CXS 156-1987) 개정작업 중 유아용 제품에 대한 정의, 제품명에 대한 의견수렴, 편집적인 문구 수정을 위한 작업
2	<b>제목</b>	< OCS (CL2019/114-NFSDU) > 영양실조치료식(ready-to-use therapeutic food; RUTF) 규범 초안의 5단계 채택을 위한 의견 수렴
	<b>주요 내용</b>	제품에 사용되는 탄수화물 중 포도당 및 과당 사용 금지에 대한 조항, 첨가물 및 아플라톡신의 최대허용치, 제품에 사용되는 단백질의 조성 및 수분활성도 설정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조항 문구검토·편집·수정 작업
3	<b>제목</b>	< OCS (CL2019/116-NFSDU) > 유아용 조제 표준과 특수 의료식 조제규범(CXS 72-1981) 내 증점제인 잔탄검과 펙틴 추가 허용 논의
	<b>주요 내용</b>	기존의 CXS 72-1981 규범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증점제'* 중 잔탄검(INS 415)과 펙틴(INS 440)의 추가 허용 여부를 결정. *증점제: 식품의 점도를 증가시켜 점착력을 갖게 하는 식품첨가물. 대표적으로 구아검(아이스크림, 케이크에 사용), 펙틴(잼, 젤리, 초콜릿에 사용), 잔탄검(마요네즈, 드레싱 소스에 사용)이 있음.
	<b>의견요청기한</b>	~2020.4.30.

CODEX 관련 문의사항 및 의견제출은 [codexkorea@korea.kr](mailto:codexkorea@korea.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안전나라](#)에서 대한민국 대표단의 CODEX 활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